



쓰고남은 농약보관 및 빈병 처리는?

전용 보관상자에 자물쇠 장치 해야 마을수집장에 모아 수거해 가도록

본래용기에 담아 어린이·노인 손 닿지 않는 안전한곳에 보관

마을별 순회일정 맞춰 '한국자원재생공사·농협' 수거에 협조

홍보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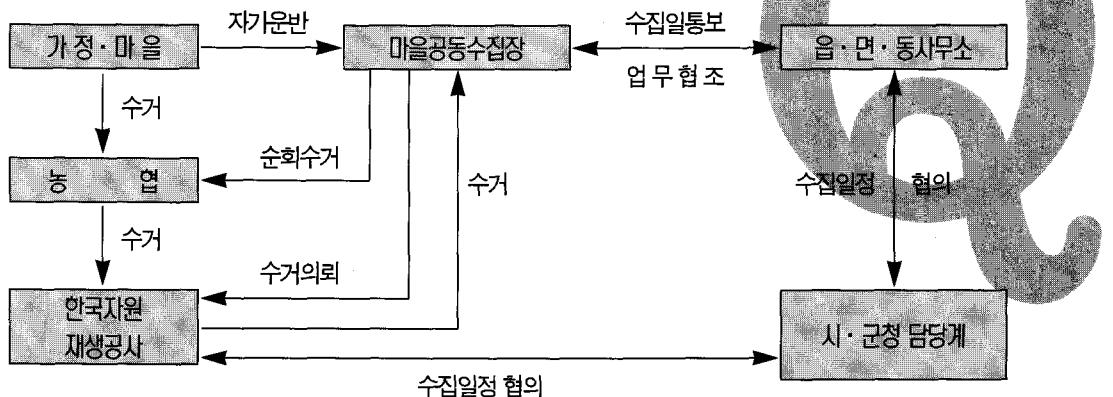
농약의 경구중독, 즉 농약을 마심으로써 일어나는 중독사고 원인의 대부분이 잘못 보관된 농약을 술에 취한 사람, 노인 또는 어린이가 음료수로 잘못 알고 마시거나 자살목적으로 이용하여 일어난다.

최근에는 노인들이 거실이나 부엌에 보관 중인 가루(분체)농약을 밀가루로 잘못 알고 반대면, 부침개 등을 부쳐먹고 중독사고를 일으키는 사고가 있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농약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손을댈 수 없도록 보관해야 하는데 농약판매업자는 농약관리법에 규정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일반 농가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유의하여 보관해야 한다.

첫째, 농약 전용보관 상자를 만들거나 현 캐비닛 등에 자물쇠장치를 하여 어린이나 노인, 술에 취한 사람이 농약을 함부로 취급할 수

없도록 해야하며 둘째, 농약보관상자는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 중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자물쇠를 채워 보관해야 한다. 셋째, 농약은 본래의 농약용기에 넣어 라벨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야하며 만약 라벨이 훼손되었다면 최소한 상표명 또는 품목명이라도 반드시 적어 보관토록 한다. 넷째, 제초제(특히 비선택성 제초제)와 고독성 농약은 다른 농약과 구분하여 보관함으로써 오용의 피해를 예방한다. 다섯째, 보관중인 농약은 용기의 부식, 약액의 누출, 마개의 풀림 등이 없는지 가끔 살펴보아야 하며 만약 용기에 이상이 발견되면 바로 견고한 다른 용기에 옮겨 담고 본래의 라벨을 즉시 붙이도록 한다. 특히 농약을 본래의 용기가 아닌 박카스병 또는 사이다병 등과 같은 다른 병에 넣으면 어린이, 술취한 사람 또는 노인

◇ 농약빈병 수거체계도



등 사리를 분명히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식음료로 알고 마실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농약을 마루밑 또는 헛간 등에 보관하면 어린이들이 술래잡기를 할 때 잘못 마시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런 곳에 보관해서는 절대 안된다.

또 농약을 사용한 뒤 빈농약병을 논·밭두렁이나 수로에 마구 버리면 병에 남아 있는 농약에 의하여 물이나 토양이 오염되고 깨진 농약병에 의해 농작업에 지장을 받거나 인축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자원을 재활용해 물자절약에 기여하기 위해 1987년부터 농약빈병을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폐비닐과 함께 현금을 지불하면서 수거하고 있다. 또한 유리병과 함께 공급되고 있는 합성수지병도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의 재활용 차원에서 1989년 8월부터 유리병과 같이 유상으로 수집하고 있다.

수집절차는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행정자치부, 농림부, 환경부의 협조 아래 각 시·도, 시·군 및 읍·면별로 연간수집 목표량을 수립한 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마을단위로

수거일정을 편성하고 이 일정에 따라 순회하면서 보상금을 주고 수거한다. 개당 수거보상금은 50원이며 kg당 보상금은 유리병은 150원(300ml병 3개 상당), 합성수지병은 1,500원(500ml병 30개 상당)이고 깨진 병도 함께 받고 있다.

그러나 농업인들의 인식부족과 수집량이 적거나 수집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장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 1997년 10월부터는 농협도 농약빈병수집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농협에서는 농업인이 수시로 가져오는 빈병을 수집하는 한편 비료 등 농자재를 운반한 후 마을 단위 또는 농가에 수집해 놓은 빈병을 농협으로 운반해 모아 놓았다가 일정량이 되면 한국자원재생공사와 협의, 수거토록 하고 있다.

따라서 농촌에서는 마을 단위별로 “농약빈병수집장”을 설치하고 쓰고 난 농약빈병을 이곳에 모아두면 한국자원재생공사나 농협차량이 순회하면서 수거하게 된다.

그러나 수집량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순회 일정과 관계없이 해당 읍·면 등을 통해 한국자원재생공사에 연락하면 수시로 수거해 가지고 있다. **농약정보**